

#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·관리 수칙 안내

< 2023. 7. 28. 질병관리청 >

## ① 환자 관리

- (격리 시행)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(환자관리팀)
  -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\*는 7일 격리 권고하며,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및 위기 단계 조정 시에도 격리 권고 유지
  - \* 관련: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참고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, '23.6.1.)
  - 격리 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실시
  - 종사자 확진 시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자택 격리 권고
- (마스크 착용)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(일상방역관리팀)
  -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(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)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
  -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시 착용 적극 권고
- (코로나19 검사)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자, 접촉자 검사 권고
  -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소자 선제검사를 실시\*하며,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실시
  - \*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(11판, 보건복지부)
  - ※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 적용 대상은 추후 보험급여과 안내 예정
- (치료제)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(환자관리팀)
  -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 예방에 중요
  - 팩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탁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

## ②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

- (손위생 철저)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
  -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 위생 시행
  - 물과 비누(15초 동안 문지름)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(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름)
- (보호구 사용)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
  -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대할 때는 보호구 4종(장갑, 마스크, 가운, 고글 등)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권고
  -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
- (교육)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
  - 환자·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, 간병인 대상 교육
  -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

## ③ 기타 감염관리

- (면회객 관리)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
  - (취약시설) 사전예약을 통해 의심증상 등 위험요인 확인 및 면회객 명부작성,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\* 및 대면 접촉시 마스크 착용
    - \* 48시간 이내 PCR 또는 지참한 자가진단키트(현장실시)로 음성 확인, 확진 후 45일 이내는 검사제외
    - \*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(11판, 보건복지부)
  - (의료기관) 가급적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면회규정 마련\*을 통해 전파 위험요인 최소화
    - \* 근거: 「의료법」제4조(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),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(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)
    - \* 참고: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 캠페인(보건복지부, '23.6.22.) (붙임1)
- (환경관리) 주기적인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
  - 소독을 위해 소독액을 묻힌 청소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자주 닦아냄
  -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실시,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, 창문 개방하여 냉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실시

No. PH\_202300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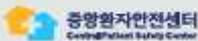
# 환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‘확인하고, 자제하고, 지켜주세요’

게시일 2023-06-22 (목)

환자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한 안전한 병문안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환자, 보호자, 병문안객, 보건의료인 모두 함께하는 올바른 병문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.

##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(첨부파일 참고)

<b>확인하기</b>	<b>자제하기</b>	<b>지키기</b>
<p><b>병문안객</b></p> <p> 시간    장소</p> <p><b>병문안 가능 시간, 장소</b></p> <p> 허용 인원 (단체 병문안 삼가)</p>	<p><b>병문안객</b></p> <p> 감염성질환자</p> <p> 유아동, 임산부, 노약자</p>	<p><b>병문안객</b></p> <p> 감염관리 수칙 손위생, 기침예절, 공용화장실 이용</p> <p> 감염 예방 애완동물, 음식물 등 반입금지</p>
<p><b>의료기관</b></p> <p> 병문안 기준 마련 및 안내</p>	<p><b>의료기관</b></p> <p> 병문안 제한 대상자 선정 및 안내</p>	<p><b>의료기관</b></p> <p> 감염 확산 방지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 안내 및 개인정보 관리</p>



\* 자료를 인용할 경우,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

### ▶ 의료기관의 병문안 기준을 확인합니다.



병문안객은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의 병문안 가능 시간, 허용 인원, 장소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, 단체 병문안을 삼갑니다.



의료기관은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병문안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, 모바일앱, 원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합니다.

### ▶ 감염성질환자 및 노약자는 병문안을 자제합니다.



감염성질환 전파 우려가 있거나 유아동, 임산부, 노약자 등 주의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합니다.



의료기관은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을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스스로 병문안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### ▶ 병문안객은 감염관리 수칙을 지킵니다.



병문안 전·후 반드시 손위생(손씻기, 손소독)을 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며, 병실 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방문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.



감염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애완동물, 음식물 등을 반입하지 않습니다.



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하며, 의료기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.